

의안번호	제 669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이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9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의자 : 이광진, 임순목, 강현삼,
김봉희, 박병진, 장선배,
김영주

1. 제안이유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충청북도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재난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5조)
- 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재난피해자 생활안정과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등을 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바. 재난피해 지원금의 지급방법과 반환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예비비확보 등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 :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7. 8. 14. ~ '17. 8. 20.(의회 홈페이지 게재)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 또는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 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도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재난피해자

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는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반환통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재원의 확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피해자와의 관계			

2. 피해자 [] 신고인과 동일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세대주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	명(본인포함 세대원)
고등학생수	() 고등학교 명 ※ 비전문계 고등학교만 작성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 피해	신고	[] 사망·실종, [] 부상(부상정도: , 치료기관명:)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확정	[] 사망·실종, [] 부상(부상정도:), [] 사업피해(휴업 [] / 폐업 [] / 실직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허가·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용자신청 여부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청여부	여 [], 부 []	내용 :
타 시·군·구 피해신고여부	여 [], 부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지원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충청북도지사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충청북도지사가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 기관 및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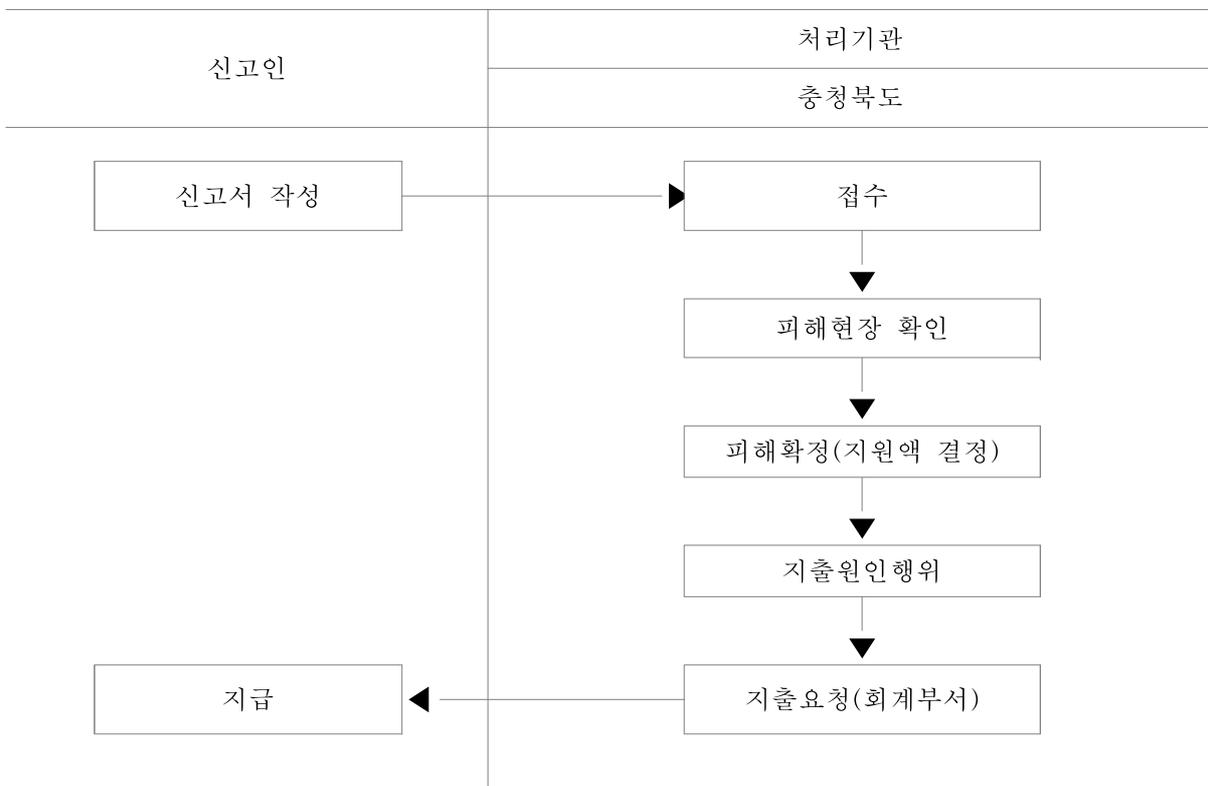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기재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이하 생략>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전문개정 2010.6.8.]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재난(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한정한다)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하며,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7. 26.>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생활안정지원

구분	소관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구호금				
1)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기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确定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사망·실종 구호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사망·실종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일 경우의 50%로 한다.
2) 부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기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确定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상을 말한다. (2) 부상 구호금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상당한 사람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일 경우의 50%로 한다.
나. 생계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생계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운영기관	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휴업·폐업 또는 실직하는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 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다. 주거비	국토교통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주거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 불가능한 경우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라. 구호비	행정안전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한 산정기준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구호비는 주택피해 등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지원한다. (2) 구호비는 나목에 따른 생계비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에 따라 산정한 금액		
마. 교육비	교육부	고등학생 6개월분 수업료	가) 국고 70% 나) 지방비 30%	(1) 수업료는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하는 고등학교 수업료 를 말한다. (2) 교육비는 생활안정지원 가 목부터 라목까지 지원 중 하나 이상을 지원 받는 가 구에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에 지원한다.

2. 피해수습지원

구분	소관기관 (협조기관)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공공시설 복구비	해당 시설물 소관부처	복구에 드는 금액	가) 국가시설의 경우: 국고 100% 나) 지방시설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공공시설 복구비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 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 별표 1 제2호사목에 따른 공공시설의 복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수색·구 조비	행정안전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 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다. 오염물 및 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환경부, 해양수산부	실시비용	국고 100%	(1) 실시비용은 인건비, 자재대, 경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포함 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중앙대책본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라. 추모사업 비용				
1) 정부 합동 분향소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행정안전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시비용	국고 100%	(1)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 여국가 차원의 조문과 분향 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2) 지원대상은 주관 부처에서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청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2) 그 밖의 추모사업	중앙사고 수습본부 운영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드는 비용	협의 결정	(1) 추모사업 추진이 결정된 경 우 지원하며 부담률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사업주관은 관계 부처에서 하고 사업실시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한다.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 하도록 하며, 그 지원기준을 도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책본부장이 확정하도록 되어있음
- 사회재난의 형태 및 규모가 예측 불가하고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과장 정민택